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기 관	책 임 자		담 당 자	
금융위원회	공정시장과장	김연준 (02-2100-2680)	허남혁 주무관 (2695)	
금융감독원	회계심사총괄팀장	박형준 (02-3145-7702)	김철호 팀 장 (7725)	
공인회계사회	심사감리본부장	한진희 (02-3149-0361)	김영미 감리위원 (0364)	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6일 제1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뉴보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,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- ※ 비상장사인 (주)위즈덤에프에이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에서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既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합병관리청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-	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1.6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뉴보텍</p> <p>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불법행위미수금 과소계상 등 (’14년 △370백만원, ’15년 △787백만원, ’16년 △1,257백만원, ’17년 △1,674백만원, ’18년 1,842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’14년부터 ’17년까지 前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으며</p> <p>- 이후 前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횡령액에 대하여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’18년 잡이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’18년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415.9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 <p>※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같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위즈덤에프에이치</p> <p>결산기 : 2017.12.31. 2018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서적출판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(‘17년 8,237백만원, ‘18년 1,70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와 관련하여 ‘16년까지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수익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오류를 외감법 감사대상이 되는 ‘17년에 반영하지 않고 ‘18년에 잘못 반영하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특수관계자 거래(지급보증) 주석 미공시 (‘17년 2,907백만원, ‘18년 2,73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위즈덤에프에이치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지분법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7년 8,237백만원, ‘18년 1,703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와 관련하여 ‘16년까지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수익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오류를 외감법 감사대상이 되는 ‘17년에 반영하지 않고 ‘18년에 잘못 반영하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과대 계상되었음에도 감사인은 회계처리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<p>② 특수관계자 거래(지급보증) 주식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7년 2,907백만원, ‘18년 2,734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,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(지급보증) 주식 관련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	<p>나래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- (주)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